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영 유 아 보 육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권덕철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아동수당법 개정(영아수당 도입)에 따라 영아수당 수급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있어 중복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무상보육의 지원에 있어 영아수당 금액만큼을 감경할 수 있게 하고, 어린이집 퇴소 후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자격변경이 늦어져 양육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구제를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(영아수당 도입)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출생 후 60일 이내 소급규정을 일반적 소급지원 근거 규정으로 전환할 필요

2. 주요내용

가. 3세 미만 아동의 영유아 무상보육 비용지원에 있어 「아동수당법」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(영아수당)을 지급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영아수당 지급금액을 제외할 수 있음(안 제23조제2항)

나. 양육수당의 출생일 60일 이내 소급규정을 일반 소급지원 규정으로 변경(안 제23조의2제3항)

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자격변경이 늦어진 경우 시군구청장은 소급지원 기간을 결정하여 소급할 수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대통령령 제 호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의 본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「아동수당법」 제4조제5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지급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.

제23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(무상보육 실시 비용) ① (생략)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 (신설)	제23조(무상보육 실시 비용) ① (생략)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 <u>이 경우 「아동수당법」 제4조제5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지급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.</u>
제23조의2(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) ① ~ ② (생략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<u>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, 이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. 다만, 보건복지</u>	제23조의2(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) ① ~ ② (생략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<u>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u>

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561